# 국제기술협력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2011. 8. 2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협력연구소의 설립 또는 교내 유치 지원
- 2.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교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 3.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
- 4.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
- 5.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추진
- 6. 그 밖에 본교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제반업무

#### 제 2 장 조 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 조교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5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센터의 제 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재 정

제8조(수입)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본교의 연구지원금 및 운영지원금
- 2. 정부 및 각종 단체 지원금
- 3. 기타 찬조금 및 기부금

제9조(회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고,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일반적인 예·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